



## ⚠ 경고

도어/트렁크/유리창을 열고 닫을 때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습니다.



- 도어 또는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나 머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부딪혀 골절, 절단과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.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도어 또는 트렁크를 열거나 닫으십시오.
- 트렁크는 일정 위치 이하 또는 이상에서 스스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므로 얼굴, 머리 등이 부딪히거나 손이 끼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.
- 유리창을 닫을 때는 탑승자의 손이나 머리가 끼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동하십시오. 특히 어린이의 머리가 끼이는 경우 질식 등 중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- 원터치 유리창 올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은 이 기능이 작동 중일 때 유리창이 올라가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원터치 유리창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여 유리창이 미리 설정된 위치로 자동으로 내려가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어린이의 신체 일부가 놓여있는 경우에는 유리창에 일정 이상의 힘(저항)이 가해지지 않아 유리창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기 전에 탑승자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스위치를 작동하십시오.
- 원터치 유리창 올림 기능을 작동하지 않고 유리창을 올리는 경우에는 원터치 유리창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. 원터치 유리창 작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취급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십시오.

[한국소비자원 '비충돌사고(Non-Crash Incident) 저감'경고사항]



## ⚠ 경고

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은 탑승자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의 복합 중상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

차단클립



안전벨트 스토퍼



놀이방 매트

**차단클립** : 버클에 삽입 시 안전벨트가 작용된 것으로 인식되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 및 경고음이 미작동

**안전벨트 스토퍼** : 안전 벨트에 장착 시 리트랙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안전 벨트 성능저하 발생

**놀이방 매트** : 차량 뒷좌석 장착 시 안전벨트 및 카시트 미착용을 유도

국내 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

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탑승자의 생명,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착용하십시오.

[한국소비자원‘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’경고사항]



## 한국지엠주식회사 차량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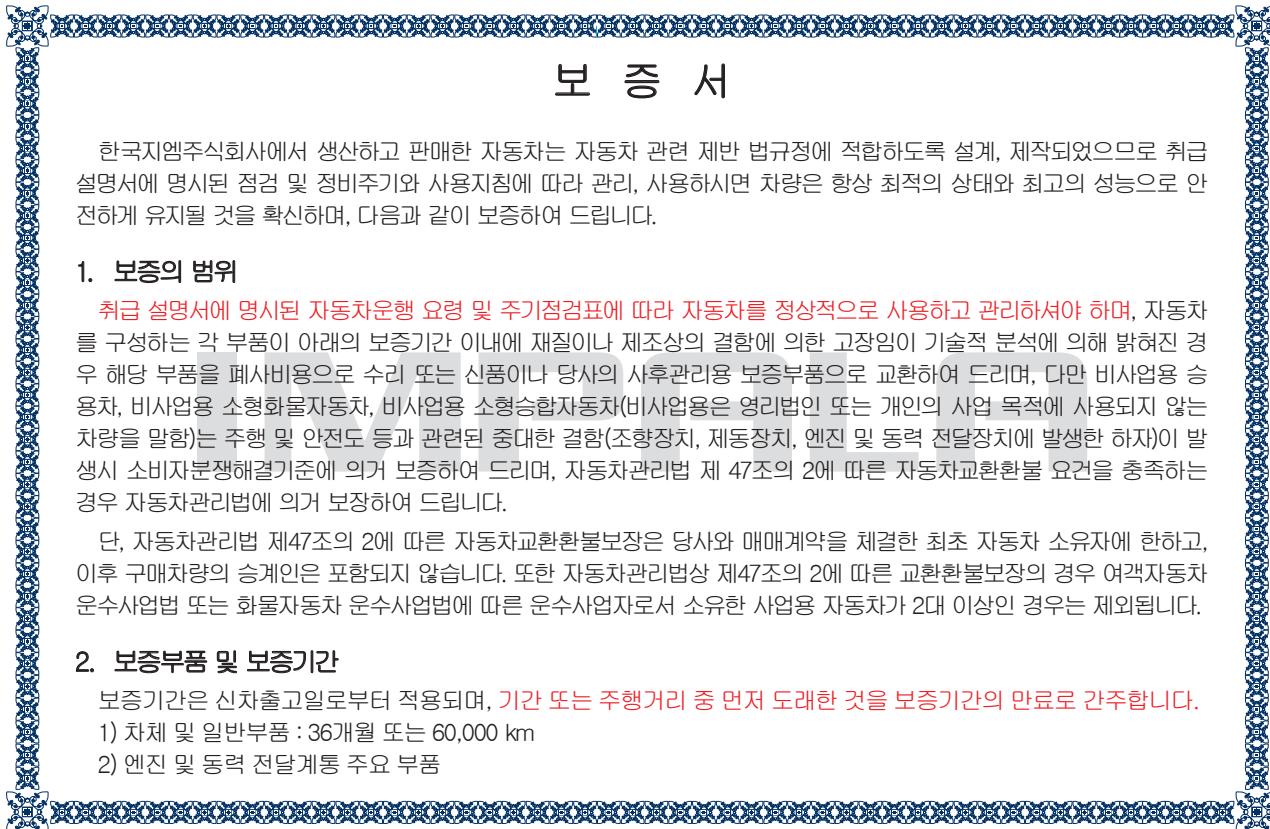
본 취급설명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취급방법을 명기하였습니다.

만약 차량의 운행 및 취급 방법의 미숙지로 인하여 차량이 오작동하는 경우,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차량 운행 전 꼭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당사는 고객께서 항상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한국지엠주식회사







구분	60개월 또는 100,000 km 보증 사항	36개월 또는 60,000 km 보증 사항
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실린더 헤드와 그 내부부품</li><li>- 실린더 블럭과 그 내부부품</li><li>- 밸브장치와 그 구성부품</li><li>- 오일펌프, 워터펌프, 서모스태트</li><li>- 배기 매니폴드</li><li>- 플라이 휠</li><li>- 각종 오일제어 밸브</li><li>- 각종 엔진내부 가스켓 및 쌀</li><li>- 타이밍 체인 및 관련부품</li><li>- 엔진 오일쿨러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흡기 장치를 제외한 엔진 전장품 일체 (알터네이터, 예열장치, 각종 모터류, 각종 저항, 케이블, 배선류, 센서, 릴레이, 스위치류)</li><li>- 냉각장치(라디에이터)</li><li>- 엔진마운트</li><li>- 타이밍벨트, 서지탱크</li><li>- 기타(배기관 및 머플러), LPG관련부품 일체</li></ul>
클러치 변속기, 추진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수동변속기</li><li>- 자동변속기</li><li>- 추진축과 관련부품</li><li>- 등속 조인트(단, 고무부트는 제외)</li><li>- 변속기 내부 가스켓 및 쌀</li><li>- 변속기 오일쿨러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클러치 커버, 릴리이스 포크, 스러스트 베어링</li><li>- 클러치 및 변속기 조작장치, 변속기 부착 전장품</li><li>- 변속기 장착용 브라켓</li></ul>
앞 뒤 차 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차동장치 및 액슬하우징</li><li>- 액슬축</li><li>- 차축내부 가스켓 및 쌀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현가.제동.조향장치의 부품일체, 휠허브, 넥클, 볼 조인트 등 앞.뒤 차축 관련부품</li><li>- 허브베어링</li></ul>



3) 냉난방장치 보증기간 : 36개월 또는 60,000 km(단, 주행거리 60,000 km 초과시 12개월)

4)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

(1)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(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관련)

정화용 촉매, 전자제어장치, 선택적환원촉매, 질소산화물저감촉매	7년 또는 120,000 km
그 밖의 배출가스 관련부품	5년 또는 80,000 km

IMPALA



## (2) 배출가스 관련부품(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관련)

1. 배출가스 전환장치중 - 산소감지기, 정화용 촉매, 매연포집필터, 선택적화원촉매장치, 요소분사기, 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, 질소산화물저감촉매, 재생용기열기	8.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중 - 촉매 감시장치 -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 - 실화 감시장치 -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-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-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 - 연료계통 감시장치 - 산소센서 감시장치 -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 -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-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- 서모스태트 감시장치 -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 -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 - 가변밸브타이밍 계통 감시장치 - 직접 오존 저감계통 감시장치 - 기타 감시장치
2.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중 - EGR밸브, EGR제어용 서모밸브, EGR쿨러	
3.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중 - 정화조절밸브, 증기저장캐ニ스터와 필터	
4.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중 - PCV밸브	
5. 2차 공기분사장치중 - 공기펌프, 리드밸브	
6. 연료공급장치중 - 전자제어장치, 스로틀포지션센서, 대기압센서, 기화기, 혼합기, 연료분사기, 연료압력조절기, 냉각수온센서, 연료펌프, 공회전속도제어장치	
7. 점화장치중 -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 (다만, 로더 및 캡은 제외)	9. 흡기장치중 - 터보차저, 바이패스밸브, 덕팅, 인터쿨러, 흡기 매니폴드



### 3.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

보증기간 이내 일지라도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
- 1) 정상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즉, 연료계통 청소, 전차륜 정렬, 휠 밸런스, 엔진튠업,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, 기타 자동차 주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.
- 2) 자동차운행에 소요되는 일반소모품 즉, 정화플러그, 노즐, 필터류, 고무 부품류, 벨트류, 클러치디스크, 브레이크라이닝, 와이퍼브레이드, 전구류, 휴즈류, 소모성 배터리류, 유류 등 차량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품목.
- 3)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이나 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배출가스 정화장치 관련 부품의 제거,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.
- 4) 유연휘발유, 불량휘발유, 불량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.
- 5)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차량운행요령 및 주기점검표대로 자동차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고장이나, 이에 대한 점검 및 정비하지 않았음을 폐사가 입증한 경우.
- 6) 적재량 초과, 취급 부주의, 수리지연,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.
- 7) 주행거리계가 고장난 채로 운행되었거나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.
- 8)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현상, 즉 가벼운 소음, 진동, 냄새, 외관, 작동 감각등.
- 9) 폐사가 지정하는 정비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제품의 구조, 성능, 기능 등을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이나 폐사가 지정한 순정부품 및 유류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고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.  
(단,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해 긴급상태에서 실시한 작업은 제외됨)
- 10) 보증수리시 해당 부품대와 기술료를 제외한 간접비용 즉, 교통, 숙박, 운휴 손실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.
- 11)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과 다른 부적절한 사용, 사양 한도를 초과하는 혹사(자동차 경주, 랠리 등과 같은 가혹한 주행, 엔진의 과회전, 과적재, 승용 정원초과, 허용주행 속도초과 등)에 기인한 고장.



#### 4.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

- (1)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항상 취급설명서 및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(2) 부적절한 점검,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장치의 기능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자동차 운행점검 및 정비기록일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으시고 정기점검 및 정비기록자료 요구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.
- (3)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(조향장치, 제동장치,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)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사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 비치된 보증수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.

#### 5. 보증수리의 실시

- (1) 본 보증서는 폐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신차 출고시 지급되며, 폐사의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- (2) 보증수리 실시장소는 폐사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폐사의 순정부품으로 합니다.
- (3) 고객이 보증수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보증서를 상기 2항의 정비공장에서 정상근무 중인 보증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(4)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제작자의 잘못에 의해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될 때이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만 보증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
6. 기 출고된 차량과 동종의 차량에 대해서 제작상 사양변경이 필요한 경우 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 
변경할 수 있으며, 기 출고된 차량에는 사양변경에 따른 추가적용 의무가 없습니다.

## 7. 보증의 계승

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의 매매,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 
계승받을 수 있사오니, 해당 자동차에 대한 보증서도 필히 인수하셔야 합니다.

폐사는 항상 귀하의 차량을 성심껏 보살펴 드릴 것이오니, 귀하의 차량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
한국지엠주식회사



